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2.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3. 정윤주 의원 외 14인 발의 (의안번호 416호)

나. 회부일자 : 2025. 2. 10.

다. 상정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2. 19.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정의 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를 같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 다. 민간위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2. 06. ~ 2025. 02.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치사무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1) 성북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민간위탁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의 정의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으로 한정된 민간위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을 제외대상 범위로 명확히 정의함.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u>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u>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p> <p>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p>

- 이는 성북복지재단 출범에 따라 해당기관을 민간위탁 조례 적용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비하여 민간위탁 제외대상 범위를 폭넓게 정비한 것으로 보임.

(2)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변경(안 제4조의2, 제4조3항 삭제)

- 안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관련 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를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재위탁은 기존대로 의회 동의를 받고, 재계약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

하되, 동일한 사무를 연속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임.

현행	개정안
<신 설>	<p>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p> <p>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p>

- 이는 민간 위탁사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계약은 의회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려는 조치로 보임.
- 또한, 동일 사무를 연속 위탁하는 경우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마련하여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관리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3) 민간위탁에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 안 제4조의3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각 부서별로 제출하는 동의안의 서식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회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 됨.

현행	개정안
<신 설>	<p>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 및 결과 공개(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업체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토록 하고 선정 결과를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p>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p>

현행	개정안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현행	개정안
<p>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u>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u></p> <p>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같음)</p> <p>② -----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p> <p>③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현행	개정안
<신 설>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불필요한 공증의무 절차 삭제(안 제10조제1항)

- 안 제10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력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2020.8.31.)’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서 협약서 인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삭제한 것임.

(7) 단순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안 제17조)

- 그 밖에 안 제7조 및 안 제17조는 단순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행정안전부 공증 의무규정 정비 계획 등을 반영하는 한편, 수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 및 의회 동의 절차 등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6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1. 제안이유

정의 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 다. 민간위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를 “공무원인 위원의 수

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

른 위탁사무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민간위탁</u>”이란 각종 법령 및 <u>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2. ~ 4. (생략)</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u></p>	<p>제2조(정의) ----- -----.</p> <p>1. “<u>민간위탁</u>”이란 각종 법령, <u>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u>지방공사·지방공단</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u>고시된 출자·출연 기관</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삭 제></p>

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
----- 하
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
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제6조--

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신 설>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
분의 1 이내-----.

③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⑧ (생 략)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3. (생 략)

② (생 략)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

-----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1. ----- 제13조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25년 2.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06호)

나. 회부일자: 2025. 2. 10.

다. 상정일자: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2. 19.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재현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금액
취득 (신축)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정릉동 673-3	연면적 1,987.37㎡ 지하2층/지상4층	12,225,000
		정릉동 687-3		

다.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추진계획
(구청장방침 자치행정과-14812, 2024.7.16.)

라.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정릉3동 주민센터는 신축 후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 불편 민원 다수 발생
-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마. 건립부지 현황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673-3, 정릉동 687-3
- 규모 : 연면적 1,987.37㎡ (부지면적 69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바. 기준가격

구분	항목	소재지	연면적(m ²)	기준가격(천원)
취득	건물 신축	정릉동 673-3 정릉동 687-3	1,987.37	12,225,000

※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신축비

사.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024. 7. ~ 2028. 6.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673-3 및 정릉동 687-3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94m², 건축연면적 1,987.37m²
- 건립규모 : 지하2층 ~ 지상4층 신축
- 공간구성(안)

구 분	용 도	면 적(m ²)
지하 2층	공조기계실, 주차장 등	372.98
지하 1층	주민자치회사무실, 프로그램실1/2 등	271.28
지상 1층	민원실, 사무공간, 탕비실, 주민등록실 등	403.26
지상 2층	동장실, 회의실, 문서고, 창고, 동대본부 등	379.43
지상 3층	커뮤니티실(공유주방), 새마을문고, 소강당(다목적실) 등	308.13
지상 4층	대강당 등	252.29
합 계		1,987.37

- 소요예산 : 12,225백만원
 - ※ 구비(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신청예정)
 - 공사비 9,743백만원
 - 용역비 2,161백만원

- 기타비 321백만원
- 예산액 산출방법
 - 2024년 타당성 용역 결과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 2025년 성북구 예산(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및
서울시특별교부금

아. 추진경과

- 2024. 04. 17. : 정릉3동 공용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4. 07. 16. :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추진계획
- 2024. 09. 12. :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2단계 심사 결정)
- 2024. 11. 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자. 향후 추진일정

- 2025. 04.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 2025. 06. : 건축 실시설계 용역
- 2026. 08. : 착공
- 2028. 06. : 준공

차. 주관과(자치행정과) 의견

- 정릉3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보다 높
은 질,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서비스 제공
에 어려움 초래
-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간확

보로 주민자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정릉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필요함

-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동 행정상으로는 민원팀과 복지팀 업무 공간의 구분·회의실 확대·휴게실 마련·화장실 등 공용 면적 확보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사내 주민자치회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주도의 자치를 실현하여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임
- 주기적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 등 주민의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외 시간대에는 공간대여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간을 운영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이하 ‘공용청사’)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공용청사’ 신축 계획안은 성북구 정릉동 673-3번지, 정릉동 687-3번지 2필지로 연면적 1,987.37㎡(부지면적 69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건립개요

- 사업명 :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637-3번지 및 687-3번지 2필지
- 규모 : 토지 694㎡, 건물 연면적 1,987.37㎡,
건물 1개동(지하 1~2층, 지상 1~4층)
- 사업기간 : 2024. 7. ~ 2028. 6. <예정>
- 총사업비 : **12,225백만원**
 - 공사비 : 9,743백만원
 - 용역비 : 2,161백만원
 - 기타비 : 321백만원

-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용청사’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²⁾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 ‘정릉3동 주민센터’는 1990년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청사의 구조적 문제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자치 운영 공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2022.11.3.)

주차 공간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건물 내외부의 경사와 가파른 계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06
----------	-----

제출년월 : 2025년2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금액
취득 (신축)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정릉동 673-3	연면적 1,987.37㎡ 지하2층/지상4층	12,225,000
		정릉동 687-3		

3.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추진계획
(구청장방침 자치행정과-14812, 2024.7.16.)

4.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정릉3동 주민센터는 신축 후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 불편 민원 다수 발생
-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5. 건립부지 현황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673-3, 정릉동 687-3
- 규 모 : 연면적 1,987.37㎡ (부지면적 69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6. 기준가격

구분	항목	소재지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건물 신축	정릉동 673-3 정릉동 687-3	1,987.37	12,225,000

※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신축비

7.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024. 7. ~ 2028. 6.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673-3 및 정릉동 687-3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94㎡, 건축연면적 1,987.37㎡
- 건립규모 : 지하2층 ~ 지상4층 신축

○ 공간구성(안)

구 분	용 도	면 적(m ²)
지하 2층	공조기계실, 주차장 등	372.98
지하 1층	주민자치회사무실, 프로그램실1/2 등	271.28
지상 1층	민원실, 사무공간, 탕비실, 주민등록실 등	403.26
지상 2층	동장실, 회의실, 문서고, 창고, 동대본부 등	379.43
지상 3층	커뮤니티실(공유주방), 새마을문고, 소강당(다목적실) 등	308.13
지상 4층	대강당 등	252.29
합 계		1,987.37

○ 소요예산 : 12,225백만원

※ 구비(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신청예정)

- 공사비 9,743백만원
- 용역비 2,161백만원
- 기타비 321백만원

○ 예산액 산출방법

- 2024년 타당성 용역 결과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 2025년 성북구 예산(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및 서울시특별교부금

8. 추진경과

- 2024. 04. 17. : 정릉3동 공용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4. 07. 16. :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추진계획
- 2024. 09. 12. :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2단계 심사 결정)
- 2024. 11. 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9. 향후 추진일정

- 2025. 04.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 2025. 06. : 건축 실시설계 용역
- 2026. 08. : 착공
- 2028. 06. : 준공

10. 주관과(자치행정과) 의견

- 정릉3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보다 높은 질,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초래
-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간확보로 주민자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정릉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필요함
-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동 행정상으로는 민원팀과 복지팀 업무 공간의 구분·회의실 확대·휴게실 마련·화장실 등 공용 면적 확보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사내 주민자치회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주도의 자치를 실현하여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임
- 주기적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 등 주민의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외 시간대에는 공간대여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간을 운영할 계획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소재지	정릉동 673-3, 687-3	연면적	1,987.37㎡
건물규모	지하2층 / 지상4층	소유자	성북구청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금회		비고 (증감)
	산출기초(천원)	금액(백만원)	
총계		12,225	
공 사 비	소계	9,743	
건축공사비	1,987.37㎡ × 3,678천원/㎡ = 7,309,547천원 근거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동청사(주민자치센터) 1,500~2,000㎡ 기준 적용	7,310	
공사비상승분	7,309,547천원 × 7.12% = 520,440천원 근거 : 건축공사비에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적용(2022년 3월 143.03 → 2024년 3월 153.21)	520	
지반공사비	197,993원/㎡ × 5,780㎡ × 1.1 = 1,258,839천원 근거 : 2019년 기준 무진동무소음 굴착조건에 따른 공사비 검토 암종별 평균단가(VAT제외)에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31.29%) 적용, 부피는 주민센터 부지 내 단가 및 지하층 층수 고려하여 적용(실제 부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259	
철거비	625.96㎡ × 102.3천원/㎡ + 133.2㎡ × 96.4천원/㎡ = 76,876천원 근거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에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적용한 단가 사용, 추가매입한 부지 철거비용 포함	77	
제로에너지건축 추가공사비	7,829,987천원 × 5.2% = 407,159천원 근거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공사비상승분)의 5.2%	407	
고용개선지원비	9,572,862천원×25.45%×1.4+2,970천원=170,099천원 근거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평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2.1, 서울시), 직접노무비(VAT포함)×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4(제경비)+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판매가, 직접노무비 비중은 공사비정보광장 유사사례 평균 노무비 비중(25.45%) 적용	170	
용 역 비	소계	2,161	
설계비	8,857,238천원 × 5.10% × 1.1 = 496,891천원 근거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기획재정부), 건축부문 제2종(보통) 상급 50억원(5.20%) 및 100억원(5.07%) 요율 직선보간법으로 보정 적용, VAT 제외 공사비 적용하였으므로 VAT 10% 포함 가격으로 산정	497	
추가설계비	451,719천원 × 14.67% × 1.1 = 72,894천원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녹색건축 우수등급/지능형건축물 5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 VAT 제외 설계비 적용하였으므로 VAT 10% 포함 가격으로 산정	73	
인증수수료	15,632천원(지능형건물인증) + 12,991천원(녹색건축인증) + 6,151천원(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 4,290천원(제로에너지인증) = 39,612천원 근거 : 각 인증관련 기준	40	
설계공모보상비	569,785천원 × 10% = 56,978천원 근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설계용역비(설계비+추가설계비)의 10% (최대 1억원)	57	

	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310,792\text{천원} \times 0.492\% \times 1.1 = 1,682\text{천원}$ 근거 :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실시설계 대인담보 사람당 1.5억 기준 공제요율표 공용청사건설공사 기준, VAT 제외 실시설계비(설계비 대비 60%) 적용하였으므로 VAT 10% 포함 가격으로 산정	2	
	설계의도구현 용역비	$517,986\text{천원} \times 8.55\% \times 1.1 = 48,717\text{천원}$ 근거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구현 시행계획(서울시), 제2종 보통공정 기준, 50억원(8.72%) 및 100억원(8.50%) 요율 직선보간법으로 보정 적용, VAT 제외 설계용역비(설계비+추가설계비) 적용하였으므로 VAT 10% 포함 가격으로 산정	49	
	감리비	$8,857,238\text{천원} \times 13.75\% \times 1.1 = 1,339,339\text{천원}$ 근거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이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1항제2호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시공감리/건축/상주감리 기준, 공사일수는 328일 기준, 특급 1명/고급 2명/ 중급 2명/ 초급 1.5명 배치기준, 감리비 요율은 산정된 감리비를 공사금액으로 나누어 표시	1,339	
	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1,217,581\text{천원} \times 0.532\% \times 1.1 = 7,125\text{천원}$ 근거 :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건설사업관리 대인담보 사람당 1.5억 기준 공제요율표 공용청사건설공사 기준, VAT 제외 감리비 적용하였으므로 VAT 10% 포함 가격으로 산정	7	
	측량비 및 조사비	$8,857,238\text{천원} \times 1\% \times 1.1 = 97,430\text{천원}$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97	
	소계		321	
기 타	청사이전비용	$16,500\text{천원} \times 2\text{회} = 33,000\text{천원}$ 근거 : 신월7동 주민센터(2023년, 18백만원), 신내2동 주민센터(2024년, 15백만원) 평균 이사비용 적용	33	
	임시청사 임대비용	$625.96\text{m}^2 \times 32,088\text{원}/\text{m}^2 \times 12\text{개월} = 241,030\text{천원}$ 근거 : 시세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정릉3동) 1층 기준 상가 평균 임대금액(32,088원) 적용	241	
	시설부대비	$8,857,238\text{천원} \times 0.25\% \times 1.1 = 24,357\text{천원}$ 근거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기획재정부), 건설부문 기준, 50억원(0.27%) 및 100억원(0.25%) 요율 직선보간법으로 보정 적용, VAT 제외 공사비 적용하였으므로 VAT 10% 포함 가격으로 산정	24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0.015\text{m}^3/\text{m}^2 \times 760\text{천원}/\text{m}^3 \times 1,987.37\text{m}^2 = 22,656\text{천원}$ 근거 : 하수도법	23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법 조 항	내 용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202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2024년 (타당성조사 등)			2025년~ (설계용역 등)			2026년~ (공사착공 등)			2027년~ (공사)			2028년~ (감리 및 내부 인테리어 등)			합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신축	건물	1	1,987.37	42	1	1,987.37	678	1	1,987.37	388	1	1,987.37	388	1	1,987.37	3709	1	1,987.37	1225

2025년~202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1	취득 (신축)	성북구 정릉동 673-3외 1	1,987.37	12,225,000	2028년(예정)	신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2.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07호)
- 나. 회부일자 : 2025. 2. 10.
- 다. 상정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2. 20.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적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주차 등 부설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내용 일부 삭제 및 수정(안 제5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1. 02. ~ 2025. 01. 2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 주차면적에 비해 많은 차량으로 혼잡하고, 이중주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요금 무료시간, 요금 부과 방식, 1일 및 월 정기권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일반주차, 1일 및 월 정기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체계는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30분은 1,000원, 1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가산되고, 1일 주차 1만원, 월 정기권은 3만원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1항³⁾을 근거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3)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30분은 1,000원, 10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가산하고,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6.7.14.)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주차요금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범위로 변경하고 무료 시간 이후 요금 30분은 1,000원 부과 및 추가 가산 방식을 삭제함. 또한 1일 주차는 1만원에서 2만원 이내로, 월 정기권은 3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주차요금 부과 상한선을 설정함. 이는 기본적인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주차요금은 시행규칙을 통해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현행	개정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u>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30분은 1,000원, 10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가산하고,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u>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u>30,000원</u> 으로 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 ----- <u>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u> ----- ----- - <u>20,000원 이내</u> -----, ----- ----- <u>50,000원 이내</u> -----.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변경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단순한 요금 인상 등 주차요금 관련 사항의 변경은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통해 신속하게 반영하고, 유연한 행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행정의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7
----------	-----

제출년월 : 2025년 2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적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주차 등 부설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내용 일부 삭제 및 수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1. 2. ~ 2025. 1. 22.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별첨2】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작성 제외 대상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개정으로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30분은 1,000원, 10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가산하고”를 “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로, “10,000원으”를 “20,000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00원으”를 “50,000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u>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30분은 1,000원, 10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가산하고,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u>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u>30,000원으로 한다.</u></p> <p>② (생 략)</p>	<p>제5조(주차요금) ① ----- ----- <u>2시간 범위 내</u> <u>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u> ----- ----- <u>20,000원 이내</u> ----- . ----- ----- <u>50,000원 이내</u>----- -.</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2.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08호)
- 나. 회부일자 : 2025. 2. 10.
- 다. 상정일자 :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2. 20.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2025 성북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 나. 위탁기간 : 2025. 04. ~ 1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티투어 종료 시까지)
-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내용

- 성북 시티투어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예약 시스템 개발·운영 및 신청접수 관련 업무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홍보
- 수행인력, 버스임차(버스랩핑 포함), 안전관리, 관광편의 제공 등
- 기타 성북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마. 위탁비용 : 총100,000천원

바. 수탁 참가 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
 - ※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대형버스(45인승) 확보(전세버스회사 임대계약 포함) 가능한 사업자
- 시·구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한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인 자

사. 위탁업체 선정 :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동의안은 '성북 시티투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시티투어 운영개요

□ 운영개요

- ('25년 예산) 총 100,000천원(전액구비)
- 운영형태 : 성북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거점을 잇는 테마형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25. 4. ~ 11. 10:00~17:00(주 2회) / 총 60회 운영(예정)
- 운행요금 : 5,000원~10,000원(입장료, 체험료 포함 / 식사 미포함)
- 운영코스 : 테마별 코스 운영 ※ 선정업체 제안코스 활용 및 협의 예정
- 운영코스 예시(2024년 코스)
 - (청와대 코스) 성신여대입구역(집결) → 북악스카이웨이(버스이동) → 청와대 → 자유중식 → 성북근현대박물관 → 심우장 → 길상사 → 한성대입구역(해산)
 - (가족힐링 코스) 석계역(집결) → 의릉,의릉역사문화관,둘레길 산책 → 자유중식 → 한양도성&와룡공원&심우장 → 길상사 → 성북근현대박물관 → 한성대입구역(해산)

시티투어 실적

□ 추진실적

구분	운영기간	운영형태	총사업비(천원)	운영실적
계	-	-	406,120 (시 400,000/구비 120)	총 194회, 3,992명
2024	2024.10.	(주)로망스투어(수의계약)	6,120(구비)	총 5회, 165명 ※시비 미확보로 역사문화탐방 행사운영비 활용 추진
2023	2023.6.~12.	(주)로망스투어(민간위탁)	143,713(시비)	총 85회, 2,291명
2022	2022.10.~12.	(주)로망스투어(수의계약)	56,287(시비)	총 29회, 888명
2021	2021.8.~11.	성북문화재단 (아트버스킹, 민간위탁)	200,000(시비)	총 75회, 648명

가. 조문 검토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4)에서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5)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티투어’ 운영은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예약 시스템개발 및 운영, 홍보 등 관광 인프라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 됨.

나. 종합 검토 결과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구민과 성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임.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08
----------	-----

제출년월 : 2025년 2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2025 성북 시티투어” 를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 위탁기간 : 2025. 4. ~ 1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티투어 종료 시까지)
- 위탁내용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및 관리
 - 성북 시티투어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예약 시스템 개발·운영 및 신청접수 관련 업무
 -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홍보
 - 수행인력, 버스임차(버스랩핑 포함), 안전관리, 관광편의 제공 등
 - 기타 성북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비용 : 총100,000천원
-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
 - ※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대형버스(45인승) 확보(전세버스회사 임대계약 포함) 가능한 사업자
- 시·구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한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인 자
- 위탁업체 선정 :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기관·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편성(민간위탁금 100,000천원)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